#### 【일련번호: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회계연도 경과 후 예산집행

소 관 부 서 〇〇

조 치 부 서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회계연도 경과 후 예산집행 내역]

(단위: 원)

년도	지출 번호	지출일자	적요	급액	전년도 발생금액	비고
계			2건	519,500	311,500	
2018	3	2018. 1. 5.	○○ 음용수(생수) 구입비 지급 (2017년 4분기)	159,500	159,500	
2019	37	2019. 2. 8.	시간외근무자 특근매식비 지급	360,000	152,000	2018.12. 발생분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및「고성군 재무회계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 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30. 시행)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 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같은 법 제7조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하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회계법」제6조제1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제2항에는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소속 구분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 공사비·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세출의 회계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30. 시행)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④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는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예산의 이월, 지난회계연도 지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지출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는 1.현황과 같이 ○○ 음용수(생수) 구입비 지급(2017년 4분기)외 1 건에 대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세출의 회계연도로 회계연도 경 과 후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으로 금311,500원 집행함으로써 회계연도 경과 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분 사항

2017년도 회계연도 경과 후 예산 집행과 2018년도 회계연도 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A에게 '훈계' 처분하고 2018년도 회계연도 경과 후 예산집행한 실무담당자 B과 실무책임자 C, D에게 '주의' 처분함.

####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일련번호: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증지 누락

소 관 부 서 〇〇

조 치 부 서 〇〇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수수료 미징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발급 신청일	사유	누락금액 (단위: 원)	비고
계	10명					49,500	
1	Е	00.00.00	-	2017.07.05	기타	5,000	
2	F	00.00.00	-	2017.11.01.	분실	5,000	
3	G	00.00.00	_	2018.03.07.	분실	5,000	
4	Н	00.00.00	-	2018.03.08.	분실	5,000	
5	Ι	00.00.00	-	2018.05.01.	분실	4,500	500원 증지첨부
6	J	00.00.00	-	2018.05.10.	사진 변경	5,000	
7	К	00.00.00	-	2018.06.01.	분실	5,000	
8	L	00.00.00	-	2018.06.04.	분실	5,000	
9	М	00.00.00	-	2018.07.23.	사진 변경	5,000	
10	N	00.00.00	_	2018.08.01.	분실	5,000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27

조제3항제1호(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제2호(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 기재사항 중 주소지외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등)외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명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함.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에서는 2017. 5. ~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함에 있어 단순분실, 사진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한 E외 8명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1명은 규정보다 적게 징수하여 수수료 49,500원을 징수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 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O, P, Q에게 '주의' 처분함.

#### 조치할 사항

누락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49,500원을 징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일련번호: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정요구

제 목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〇〇

조 치 부 서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다수의 건설 공사를 추진하고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급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기계 대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해당 경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서 발급금액를 계상하여야 했으며, 또한 일부 계상된 공사에 대하여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지출 금액을 확인 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했어야 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에서 추진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반영여부를 확인한 결과 ❖❖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제외한 다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영된 2건의 공사는 [표 1]과 같이 집행한 내역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이한 결과 236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미정산 내역] (단위: 원)

고니면	01 +1	LIME		공사비(원)		건설기계 대여금	도급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계	도급액	관 <del>급</del> 액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미정산 금액		
��마을안길 정비공사	00 <b>2</b>	○아스콘덧씌우기: A=19a	28,720,000	14,100,000	14,620,000	168,000	●① 대표 R	
▼▼마을 기반시 설(주차장)정비공 사	1 ( )( )	○아스콘덧씌우기: A=17.6a	31,580,000	18,000,000	13,580,000	68,000	<b>♣♣</b> 대표 S	

※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정산 없이 지급한 236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일련번호: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 설계 부적정 및 정산 소홀

소 관 부 서 〇〇

조 치 부 서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마을안길) 외 3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과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회계 예규 5절3관에 따르면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환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이며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경비로서 규정하고 있다.

「교통노면 표시 설치·관리 매뉴얼」(2012.12.경찰청) 제2장 제4절 및 제5절에 따르면 노면 표시용 도료는 제1종부터 제5종까지 5종류 가운데 KS M6080에 따라 재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수용성 노면표지용 도료(제2종), 융착식 노면표지용 도료(4종),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제5종) 3가지 종류만 사용하도록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능성 유리알(비드) 및 첨가제를 혼합하여 도료의 내구성, 재귀반사성능, 야간 및 우천(습윤)시 시인성을 향상시킨 차선표시 조성물을 설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에서 추진한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에 대하여 설계서를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공종의 노무비를 계상하면서 공사 구간내 이동차량과 보행자 통제를 위하여 시·종점에 배치하는 근로자는 목적물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간접노무자가 아니므로 노무비가 아닌 경비항목에 계상하여야 하나, 노무비에 반영하여예정가격을 작성하였으며, 도로차선의 재귀반사성능 향상을 위하여 우천 시에도시인성 확보가 쉬운 비드(유리알)를 고휘도(1호)와 우천형 유리알을 혼합하여살포하도록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장은 협소한 도로에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공사로서 일 교통량과 운행 차량들의 속도, 도로의 등급 등 현지 여건을고려할 경우, 고가인 기능성 유리알 (습윤형 유리알: 32,000원/kg)이 불필요함에도 현장여건 및 안전시설 요구 성능 등 면밀한 조사·검토 없이 재료비가 고가인 습윤·우천형 유리알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과다설계 하는 등 예정가격작성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에서는 설계서에 잘못 적용된 사항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1,055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설계변경 및 정산 미이행 내역]

(단위: 원)

공사 명	위 치	LIOGE		공사비(천원)		설계변경 및 정산 미이행	도급자	비고
5 시 5	TI AI	사업량	계	도급액	도급액 관급액		포ㅂ시	니브
♠ ♠ 마을기반시 설 정비사업(마 을안길)	l	○아스콘덧씌우기: A=25a	31,470,000	12,600,000	18,870,000	821,000	▽▽ 대표 Z	교통통제원 유리알
××마을안길 아 스콘재포장공사	00	○아스콘덧씌우기: A=23.7a	32,880,000	16,500,000	16,380,000	75,000	수수 대표 X	교통통제원
■■지구 농로포 장공사	00	○아스콘덧씌우기: A=19.56a	30,580,000	13,360,000	17,220,000	81,000	▽▽ 대표 Z	교통통제원
◈◈마을안길 정 비공사	00	○아스콘덧씌우기: A=11.7a	23,280,000	12,950,000	10,330,000	78,000	▽▽ 대표 Z	교통통제원

※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 처분 사항

실무담당자로서 설계서에 잘못 적용된 사항에 대하여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T, U(현 ◆◆)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함.

## 조치할 사항 ○○장은

설계변경 또는 정산 없이 지급한 1,055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 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일려번호: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관정개발사업 일상감사 미이행

소 관 부 서 〇〇

조 치 부 서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공사 명	위치	사업량	Ą	사비(천원	)	공사기간	도급자	
8 76 8		^টেক	계	도급액	관급액	ያላነላ የ		
∵∵관정개발 사업	00	○암반관정 개발 1식	36,051	19,700	16,351	2017.11.13. ~ 2017.12.10.	▷▷ 대표 V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에 앞서 감시기구의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성군 일상감사 규정」조례에 따르면 읍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4천만원 이상과 변경 계약금액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한도액 이상을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 2017.11.08. ▷▷ 대표 V과 19,700천원에 계약한 「∵∵관정개발사업」의 경우, 설계내역서상의 추정금액[도급액+관급자재비]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급액 21.830천원과 관급자재 18.170천을 합산한 금액이 40.000천원이

므로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시행전 감사부서에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예정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하나, 일상감사를 받지 아니한채 시행품의[○○-11362, 2017.11.7.]를 득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공한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처분 사항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실무 담당자 W(현 ☆☆)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함.

#### 조치할 사항 이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